

# 보내는 사람

---

---

## [제출 서류의 자가 점검표]

• 신청 등급: ( ) 급 - ( ) 번

• 제출 서류:

해당 등급	서류 종류	매수
전체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승급 (경력)	[1-12], [2-13], [2-14], [3-5]	한국어교원 경력증명서
학위 과정	[2-9], [3-10], [2-1], [3-2]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비학위 과정	[3-11], [3-7], [3-6]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각 1부씩 제출)
기타	(2-9), [3-10] 신청자 중 외국국적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개명으로 각종 증명서 내 이름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초본	

## 받는 사람

07511) 서울 강서구 금남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담당자 앞

# 서 약 서

본인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을 하고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시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및 공지 사항을 숙지하여 모든 서류를 작성·제출하며, 신청서 기재 오류,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숙지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출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기재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신청 무효, 자격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용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에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은 제출 서류의 보완을 최대 2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만일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용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